

## NH Bank legal brief

# 은행법 및 지주회사법상 신용공여한도 비교

2022. 8. 12.

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은 은행의 신용공여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,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어 실제 적용 시 양 법률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에 대한이해를 돕기 위해 법조문의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.

#### 은행법 및 지주회사법상 신용공여한도 주요 내용

|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| 은행법  | 금융지주회사법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|
| 동일차주에 대한<br>신용공여한도       | 자기자본의 25%<br>*동일차주 :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등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                     |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기자본의 20%  |   |  |
|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<br>각각       | 다만, 각각에 대해 <b>거액</b> (은행 자기자본의 10% 초과) 신용공여인경우 총 합계액은,<br>은행 자기자본의 5배 이내 | 다만, 지주회사의 10% 초과 주식을 보유하는 <b>동일인</b> 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은,<br>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자기자본<br>순합계액 25%와 동일인의 출자<br>비율 해당 금액 중 적은 금액 |  |
| 대주주, 주요출자자 등<br>특수관계인    | 자기자본의 25%와 대주주(주요출자자)의 출자비율 해당 금액 중<br>적은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다만, 전체 대주주에 대한 신용<br>공여 합계액은, <u>은행 자기자본의</u><br>25% 이내                  | 다만,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<br>여 합계액은, 지주회사 및 자회<br>사(손자회사) <u>자기자본 순합계액</u><br><u>의 25% 이내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신용공여한도 적용<br>'특수관계인'의 범위 | 특수관계인에서 국외현지법인·사<br>모집합투자기구(PEF)의 투자대상<br>기업 등은 제외                       | 국외현지법인·사모집합투자기구<br>(PEF)의 투자대상기업 등이 특수<br>관계인에 포함   |  |



## ※ 신용공여한도 관련 규정

| 신용공여 대상   | 은행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금융지주회사법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동일차주  | 제35조 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45조 제1항                    |
|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   | 제35조 제3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45조 제2항                    |
|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<br>거액 신용공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35조 제4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금융지주회사 10% 주식 초과보유<br>동일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45조 제3항                    |
| 대주주(주요출자자)  | 제35조의2 제1항<br>(국외현지법인 제외<br>특수관계인 포함) | 제45조의2 제1항<br>(특수관계인 포함)    |
| 전체 대주주(주요출자자 모두)  | 제35조의2 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45조의2 제2항                  |
| 특수관계인 범위  | 시행령<br>제1조의4 제1항                      | 시행령 제3조 제1항<br>(은행법 시행령 준용) |
| 특수관계인 범위 제외<br>(민간투자 경영회사, 기업구조조정 대상<br>회사, PEF 투자대상기업 등) | 시행령<br>제1조의4 제2항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동일인 범위 제외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행령<br>제3조 제2항              |

## ※ 신용공여한도 관련 적용 예시

| 사 례                    |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● NH은행 홍콩지점이 NH증권 홍콩 현 | 증권의 자회사(국외현지법인)는 특수관계인에 해당     |  |
| 지법인에 신용공여하는 경우         | 하여 <u>신용공여한도 적용</u>            |  |
| ② NH금융지주가 NH은행 캄보디아 현  | 금융지주회사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<u>신용</u> |  |
| 지법인에 신용공여하는 경우         | <u>공여한도 적용</u>                 |  |
| ❸ NH은행이 NH경제지주의 자회사에   | NH경제지주 자회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       |  |
| 신용공여하는 경우              | 신용공여한도 적용                      |  |